Yulchon Legal Update

2026.08.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으로 인한 입찰·평가상 불이익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임을 확인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율촌은 최근 종합건설업체(이하 '**신청인**')를 대리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 한 2025년도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이하 '**대상 결정**'). 신청 5일 만에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처분의 효력을 우선 차단하였고, 심문기일을 거쳐 신속히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통보와 동시에 각종 입찰·평가에 자동적으로 반영됨에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공단이 이를 다투어 왔습니다. 대상 결정은 공단이 추상적인 손해발생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툰 사안에서 집행정지 요건의 충족을 인정한 것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의 구조와 그 불이익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라 매년 건설업체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여 통보합니다. 통보된 수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에서 최근 3년간 공사실적 가중평균액을 최대 9%까지 감액하는 사유가 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에 각각 감점으로 반영됩니다. 직접 적용기간은 매년 7. 1.부터 1년간이나, 최근 3년간 수치의 가중평균 구조를 통하여 그 불이익은 이후 수년간 누적됩니다.

더욱이 2026. 7. 1. 시행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계약담당자로 하여금 공단이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 점수를 확인하여 심사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고,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역시 건설업 평균 대비 배율에 따라 건설안전 심사 점수가 자동 산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본안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 감점의 불이익이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특히 1년간의 영향이 직접적이고 중대하기 때문에 통보 직후의 신속한 대응 여부가 실질적인 권리구제의 관건이 됩니다.

2. 대상 결정의 사안 및 요지

가. 사안의 경위

신청인의 건설현장에서 준공청소 작업을 마친 작업자가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공단은 이를 신청인의 사고사망자 수에 산입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년간 사고사망만인율 0.00을 유지하여 온 신청인은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의 모수가 되는 상시근로자수가 적기 때문에 단 1명의 사망사고로도 사고사망만인율이 크게 치솟게 됩니다. 신청인은 두 차례에 걸쳐 공단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이에 율촌이 본안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정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나. 주요 쟁점 및 대상 결정의 요지

공단은 평가상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것은 추상적인 손해 발생 가능성에 불과한 점 등을 주장하면서 집행정지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따라 입찰·평가상 불이익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율촌은 이의신청 관련 자료와 신청인이 실제 참여하여 온 공공입찰에 관한 방대한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공단이 통보한 수치로 인하여 개별 입찰마다 수주 기회의 상실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사후에 원상회복하거나 금전으로 전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치밀하게 주장·소명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 8. 10.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면밀히 살핀 끝에,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반면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보아, 신청을 인용하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였습니다.

3. 대상 결정의 의의 및 시사점

대상 결정으로 신청인은 공공입찰 전반의 감점과 시공능력평가 실적액 감액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에서 벗어나, 하반기 공공공사 시장에서 입찰 경쟁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청 5일 만에 잠정 집행정지에 이어 신속히 본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개별 입찰 기회가 날마다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상황에서 손해를 조기에 차단하였다는 점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은 적용 첫 1년간의 영향이 가장 직접적이고, 그 불이익이 통보 즉시 현실화되므로, 통보를 받은 건설업체로서는 지체 없이 본안소송과 집행정지를 준비하는 긴급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손해의 현실성은 관념적인 주장만으로 소명되지 아니하므로, 사고사망만인율의 산정 구조와 처분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한 바탕 위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그 불이익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치밀하고 면밀하게 논증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상의 내용에 관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 Areas

중대재해 센터 | 부동산 건설

Contact

정유철 변호사
02-528-5212
ycjung@yulchon.com

송민경 변호사
02-528-5797
mksong@yulchon.com

조희태 변호사
02-528-5431
htcho@yulchon.com

정대원 변호사
02-528-5252
dwchung@yulchon.com

김현근 변호사
02-528-6407
hyunkeunkim@yulchon.com

정인태 변호사
02-528-5738
itjeong@yulchon.com

황준섭 수석 전문위원
02-528-5888
jshwang@yulchon.com

법무법인(유) 율촌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Copyright 2026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